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24

창 원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	2019구단3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 고	A 주식회사
피 고	[redacted]남도 [redacted]군수
변 론 종 결	2019. 6. 5.
판 결 선 고	2019. 6. 26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8. 10. 1. 원고에게 한 취득세 91,033,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가. 피고의 본안전 항변

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24

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런데 을 제6,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2018. 10. 4.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,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이후인 2019. 3. 18.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형원